

전라북도 공고 제2017-1328호

2017년도 하반기 전라북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7년도 하반기 전라북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8월 31일

전라북도지사

1 선발예정인원 및 필기시험과목

채용구분	채용계급	채용분야	선발 예정인원			필기시험 과 목	필기시험 시 간
			계	남	여		
경력경쟁 채용시험	지방소방사	구급	46	41	5	필수(3)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3과목 (60분) 10:00~11:00	

※ 필기시험 문제는 비공개(중앙소방학교 출제)로 문제지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 필기시험 과목의 출제범위

- 소방학개론 :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 제3조 관련 [별표1]참조 **붙임1**
- 지방소방사로 경력경쟁채용을 하는 경우 필수과목 중 “영어”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함(「소방공무원임용령」 제44조 관련 [별표5])

2 시험 방법

※ 선행되는(전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제 4지 택1형
- 합격자 결정 : 매 과목 40%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합격자 결정
 ※ 2배수를 초과하여 채용분야별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
- 시험문제 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책 회수
 ※ 서류전형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연령, 자격제한, 경력제한 해당여부 확인

나. 제2차 시험 : 체력시험

-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의2 관련 [별표7] 참조 **붙임2**
-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총점의 50%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종목별 측정방법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 관련 [별표4] 참조 **붙임3**

※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문

- 도핑테스트 시행안내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도핑테스트를 실시하고자 함
- 도핑테스트 절차 등 안내는 **붙임4**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공무원임용시험 도핑방지지침(인사혁신처 고시 제2014-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은 허용되지 않음 (세부내용은 **붙임5** 참조)
- 테스트 대상자 선정방식 : 체력시험 응시 대상자 중 **10% 이내** 무작위 추첨에 의해 선정
-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동의서는 체력시험 응시자에 한하여 제출)
 -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에 따라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다. 제3차 시험 : 신체검사

- 신체검사 방법 : 신체검사는 시험실시기관이 지정한 **종합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시험실시기관에 제출(수수료 응시자 부담)
- 지정**종합병원**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www.hira.or.kr>) ‘병원·약국찾기’ 페이지에서 병원규모를 종합병원으로 선택 후 검색 시 확인 가능
-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3항에 따른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사람 모두를 합격자로 함
 - 신체조건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제7항 관련 [별표5] 참조 **붙임6**
 - 불합격 판정기준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관련 [별표3] 참조 **붙임7**
- ※ **색각에 이상이 있는 응시자는 종합병원에서 아노말로스코프(색각경) 검사를 받아 신체검사와 같이 제출하여야 함**
- 신체검사결과 제출 등의 세부일정은 제2차 시험(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알려드립니다.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면접시험 방법 : 1단계(**집단면접**) + 2단계(**개별면접**) 구분 실시
- 평정요소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3항 규정에 의함
- 합격자결정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 면접시험 전 인·적성검사 실시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체력시험 합격자에 대한 인·적성검사 실시
- 인·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되며, 인·적성검사 일정은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다. 최종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시험의 합격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실기)시험성적 75%, 체력시험성적 15%, 면접시험 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선발예정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함(총득점에 의하되,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 인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응시 자격

가. 응시결격사유(기준일: 면접시험 최종일)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제10항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및 제51조,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공공기관 등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 ①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제1항 및 그 밖의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나. 성 별 : 남·여 구분모집

다. 응시연령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1항 [별표2]

구 분	직 급	응 시 연 령	해 당 생 년 월 일
경력경쟁	지방소방사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6. 1. 1. ~ 1997. 12. 31.

※ 응시상한연령의 연장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제34조의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사람 포함) 응시 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라. 거 주 지 : 제한 없음

마. 자격(면허)·경력 제한

○ 공통사항

-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소지한 사람

- 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소지한 사람으로서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해야 함

○ 경력경쟁채용시험 자격(면허)·경력 제한

- 자격(면허)기준일 : 필기시험일 현재 소지한 사람으로서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해야 함

- 경력산정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선발 분야	채용 계급	응 시 자 격
공 통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다만,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제1항 및 그 밖의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함.
구급 (경력)	지방 소방사	▶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면허증)을 소지한 후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이 있는 자 ※ 해당분야 : 붙임8 참조

※ 자격(면허)증 및 경력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경력증명서는 해당 분야의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 등의 경력**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확인·증명**할 수 있어야 함
2. 경력증명서 제출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고용노동청 발급)**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3.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해야 함
4. 자격(면허)증, 경력증명서 등 서류 확인 결과 **부적합한 자는 합격취소 또는 무효처리** 됨

바. 신체조건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제7항 관련 [별표5]

부분별	합 격 기 준
체 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 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신(色神)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 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상기 신체 조건표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에 의함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접수·취소시간 : 09:00~21:00)	시 험 일 정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 험 일	합격자발표일
<접수기간> 9. 11.(월) ~ 9. 13.(수) <접수취소기간> 9. 11.(월) ~ 9. 19.(화) * 토요일, 일요일 제외	필기시험	10. 18.(수)	10. 28.(토)	11. 17.(금)
	체력시험	11. 17.(금)	11. 27.(월) ~ 11. 28.(화)	11. 30.(목)
	신체검사 및 인·적성검사	11. 30.(목)	12. 1.(금) ~ 12. 5.(화) * 위 기간에 측정한 신체검사서만 인정	12. 14.(목)
	면접시험	12. 14.(목)	12. 21.(목) ~ 12. 22.(금)	12. 28.(목)

※ 시험 장소, 합격자명단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전라북도청 홈페이지 (<http://www.jeonbuk.go.kr>) 「도정정보 - 시험·채용 - 시험안내 또는 시험공고 또는 합격자발표」란에 공고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 수 처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홈페이지(<http://local.gosi.go.kr>)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센터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하며, 원서접수와 관련된 사항은 인터넷원서접수센터(☎1522-066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나. 접수일시 : 9. 11.(월) ~ 9. 13.(수) 09:00 ~ 21:00

다. 취소기간 : 9. 11.(월) ~ 9. 19.(화) 09:00 ~ 21:00 * 토요일, 일요일 제외

라. 응시수수료

- 5,000원과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카드결제·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 수수료 면제(응시원서 접수 시 결제 및 수수료 면제 신청, 원서접수 마감 후 자격확인 및 환불)

마. 응시원서 사진

- 사진은 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으로, 반드시 귀가 나오도록 하여야 함(스냅사진 등록 불가)
-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 : 3.5cm × 4.5cm(140×180Pixel)기준, 해상도는 100dpi 이상
- 응시원서 등록 사진은 시험 당일 본인 확인 등에 활용되므로 사진 등록 후 본인 사진 여부 및 규격 등을 반드시 확인

- 사진 식별불능 및 등록오류로 인하여 원서접수센터에서 사진교체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함
- 응시원서 등록사진은 최종합격 후 동일 사진이 추가 필요하므로 원판보유 사진으로 등록 후 보관하여야 함

바. 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동일 날짜의 시험에 중복·복수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합니다.
- 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 시에는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인터넷 취소만 가능)**
- 응시표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응시표 출력기간에 출력할 수 있으며 시험 당일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여야 합니다.
- 연령, 경력, 자격증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 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6 가 산 특 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사자 본인 및 가족은 각 시험(필기, 체력, 면접)마다 각 시험별 만점의 일정비율(10%, 5%, 3%)을 가산합니다.

※ 단, 필기시험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5%, 3%)을 가산

- 단,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의사상자는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가점에 의한 선발 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취업지원대상자 : 모집단위별로 4명 이상을 선발하는 경우에만 가점 적용
 - 의사상자 : 모집단위별로 10명 이상을 선발하는 경우에만 가점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와 가산비율은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산비율은 보건복지부(☎ 044-202-3251) 및 시·군 관련부서에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에게 부여하며, **가산 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보훈번호, 의사상자 증서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 **CMR 답안지에 가산점 표기란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10%, 5%, 3%)과 보훈번호·의사상자 증서번호 입력

※ 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 증서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 가. 응시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와 답안지의 기재사항 착오·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나.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 시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응시자는 시험 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실에 입실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신분증 미소지자는 시험실 입실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 답안작성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 사용**
- 라.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장에는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및 휴대전화기 등 통신장비**는 일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마.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바. 시험 문제는 비공개로 시험 종료 후 회수합니다.
- 사. 시험에 있어 **부정행위(도핑테스트 비정상 분석 결과자 포함)**를 하거나 연령, 경력, 가산점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지방(소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되는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 시험단계별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공무원임용령」 등의 관련법규를 적용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됩니다.
- 자. 응시희망자는 본 공고문과 「소방공무원법」 등 관련법령을 확인하여 응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차.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전까지 **전북도청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도정정보 - 시험·채용 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총무과 고시팀(063-280-2213) 또는 전북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방행정팀(063-280-381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분 야		내 용
소방조직	1) 소방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의 발전 과정 - 소방행정체제와 기능 및 책임 - 소방조직관리의 기초이론 - 소방자원관리(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관리 개요) - 민간 소방조직의 종류와 역할 (의용소방대,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설계·시공·감리·점검, 소방용 기계·기구의 제조·검정)
	2) 소방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활동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 위험물 안전관리 - 구조·구급 행정관리와 구조·구급 활동 - 재난대응활동 등 소방조직 및 소방기능 관련 내용
재난관리	1) 재난 및 재난관리의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의 특징과 유형 - 재난관리의 개념과 단계별 관리사항
	2)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긴급구조 - 안전관리계획, 예방, 대비, 응급대책, 복구, 재정 및 보상 등 재난관리 관련 내용
연소이론	1) 연소개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소 반응식과 에너지 수지 - 연소의 조건 및 형태 - 발화의 조건 및 과정
	2) 연기 및 화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기의 정의 - 연소 가스 - 화염의 형태 및 열방사 - 열전달 방식 등 연소 관련 내용
	3) 폭발개요 및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발의 조건 - 화학적 폭발 (물리적 폭발과 개념 구분) - 기상 폭발과 응상 폭발 - 폭연과 폭굉 - 가스·분진·분해 폭발 - BLEVE 등 폭발 관련 내용

분 야		내 용
화재이론	1) 화재의 정의 및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의 정의 - 화재의 종류(일반, 유류, 전기, 금속, 가스)와 종류별 기본 소화 방법
	2) 건물화재의 성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의 진행단계별 특성 - 특수현상(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 등)과 대처법
	3) 위험물화재의 성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의 류별(제1류~제6류) 특성과 소화방법 - 보일오버 등 위험물 화재의 특수 현상과 대처법
	4) 화재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조사의 개요(목적, 방법, 절차 등) - 화재 원인 및 피해 조사 기초 등 화재 관련 내용
소화이론	1) 소화 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화의 기본 원리(방법) - 소화 방법(냉각·질식·제거·부축매 효과)별 소화 수단
	2) 소화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 소화약제 소화원리 - 포 소화약제 소화원리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소화원리 - 분말 소화약제 종류와 특성 및 소화원리 - 청정소화약제의 개념과 요건
	3) 소방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화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경보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피난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용수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활동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등 소화 관련 내용 ※ 소방시설의 구체적 설치기준 제외

붙임2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종 목	성별	평 가 점 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kg)	남	45.3~ 48.0	48.1~ 50.0	50.1~ 51.5	51.6~ 52.8	52.9~ 54.1	54.2~ 55.4	55.5~ 56.7	56.8~ 58.0	58.1~ 59.9	60.0 이상
	여	27.6~ 28.9	29.0~ 30.2	30.3~ 31.1	31.2~ 31.9	32.0~ 32.9	33.0~ 33.7	33.8~ 34.6	34.7~ 35.7	35.8~ 36.9	37.0 이상
배근력 (kg)	남	147~ 153	154~ 158	159~ 165	166~ 169	170~ 173	174~ 178	179~ 185	186~ 194	195~ 205	206 이상
	여	85~ 91	92~ 95	96~ 98	99~ 101	102~ 104	105~ 107	108~ 110	111~ 114	115~ 120	121 이상
앞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남	16.1~ 17.3	17.4~ 18.3	18.4~ 19.8	19.9~ 20.6	20.7~ 21.6	21.7~ 22.4	22.5~ 23.2	23.3~ 24.2	24.3~ 25.7	25.8 이상
	여	19.5~ 20.6	20.7~ 21.6	21.7~ 22.6	22.7~ 23.4	23.5~ 24.8	24.9~ 25.4	25.5~ 26.1	26.2~ 26.7	26.8~ 27.9	28.0 이상
제자리 멀리 뛰기 (cm)	남	223~ 231	232~ 236	237~ 239	240~ 242	243~ 245	246~ 249	250~ 254	255~ 257	258~ 262	263 이상
	여	160~ 164	165~ 168	169~ 172	173~ 176	177~ 180	181~ 184	185~ 188	189~ 193	194~ 198	199 이상
윗몸 일으 키기 (회/분)	남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여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 오래 달리기 (회)	남	57~ 59	60~ 61	62~ 63	64~ 67	68~ 71	72~ 74	75	76	77	78 이상
	여	28	29~ 30	31	32~ 33	34~ 36	37~ 39	40	41	42	43 이상

※ 배근력 측정시 소수점 이하 버림

비고

1.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2. 각 종목별 측정 방법 등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붙임3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종 목	측 정 방 법 등
악 력 (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 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 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가장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배 근 력 (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배근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 양발을 15cm 정도 벌린 자세로 배근력계 위에 올라서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배근력계 손잡이를 잡은 후 배근력계와 상체의 각도가 30°가 되도록 배근력계 손잡이의 높이를 쇠줄로 조절한다. 준비가 되면 전력을 다해 몸을 일으킴으로써 배근력을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앞아랫몸 앞으로 굽히기 (c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앞아랫몸앞으로굽히기 측정대(전자식 측정기 가능), 매트 1개 ○ 측정 단위 : cm ○ 측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검자는 신을 벗고 양 발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닿도록 하여 무릎을 펴고 바르게 앉는다. 양발 사이의 넓이는 5cm를 넘지 않게 한다. - 양 손바닥은 곧게 펴고 왼손바닥을 오른손 등위에 올려 겹치게 하여 준비 자세를 취한다. - '시작' 구호에 따라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측정기구의 눈금 아래로 손을 뻗친다. - 보조원은 피검자가 윗몸을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피검자의 무릎을 가볍게 눌러준다. - 계측원은 피검자의 손가락 끝이 3초 정도 멈춘 지점의 막대자 눈금을 읽어서 기록한다. -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 유의사항 : 허리의 반동을 이용하거나 갑작스럽게 상체를 굽혀 손을 뻗었을 경우 또는 피검자가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을 굽혔을 경우 재검사를 실시한다.

종 목	측 정 방 법 등
제자리 멀리뛰기 (c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구름판 및 모래티(구름판 위치와 같은 높이로 모래를 정리) 또는 전자식 제자리 멀리뛰기 측정판 ○ 측정 기록 : cm ○ 측정 방법 : 발 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 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착지점(신체의 어느 한 부분)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윗몸 일으키기 (회/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매트(윗몸일으키기대, 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 측정 기록 : 회 ○ 측정 방법 : 양발을 3cm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 이상 일으킨다.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왕복오래 달리기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길이 20m, 1인당 폭 1m 이상 되는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 - 음량이 적절한 CD 플레이어 또는 카세트플레이어 - 점증속도에 따라 울리는 신호음이 녹음된 CD 또는 오디오카세트 - 녹음 CD : 별도 ○ 측정 기록 : 단위(회) ○ 측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m코스의 양쪽 끝선에 테이프나 분필로 선을 긋는다. - 출발신호원의 '출발' 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 - 먼저 도착한 피검자는 출발자의 '출발' 신호가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 - 매 분마다 점점 빨라지도록 정해진 속도에 맞추어 20m 거리를 가능한 오래 왕복하여 달린다. -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속도가 빨라진다. - 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 거리의 횟수를 기록한다.

비 고 :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측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왕복오래달리기 종목의 경우 실수로 넘어진 경우 포함) 그 해당 종목에 한하여 재측정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붙임4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문

□ 도핑테스트 절차

- 시료는 응시자의 소변으로 하고, 시료수집책임관 관리 하에 소변 채취통에 90ml 이상이 되도록 수집 한다.
- 응시자는 시료채취 용기를 직접 선택한 후, 시료수집책임관이 A시료병에 60ml, B시료병에 30ml의 양으로 나누어 넣은 뒤 밀봉하여 응시자가 직접 확인한다.
- 응시자가 시료채취 용기를 선택한 그 시점부터는 시료채취 용기는 응시자 또는 시료수집책임관 입회하에 다룬다.
- 시료채취용기의 관리번호와 성명, 응시번호, 주민번호 앞자리 등 개인식별번호는 관련 서류에 기재하고, 응시자가 확인.서명을 한다.
- 시료수집책임관은 소변시료가 분석하기 적합한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해 채취용기에 남은 소변의 비중을 확인하고, 적정비중 이하인 경우에 응시자는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야 한다.
- 채취된 소변 시료(A, B)는 보관운송책임관이 분석기관으로 전달되며, 전달된 시료 중 A시료가 분석되며, B시료는 냉장 보관된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전라북도에 서면으로 통보되며, 분석결과 비정상(양성)이 나온 경우 해당 응시자는 비정상 분석결과를 통보받은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치료목적 사용면책 등 의견을 제출하거나, B시료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 의견제출시 :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다
 - B시료 분석 요청시 :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분석과정에 참관할 수 있으며, B시료 분석결과가 A시료의 비정상 분석결과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음성으로 최종 판정되지만, B시료 분석결과 역시 비정상 분석결과로 확인되는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불합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

- **(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절차)**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구비서류를 갖추어 **별도의 지정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 **(승인기준)** 치료목적사용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한다.

- ▶ 응시자의 급성 또는 만성 의 의료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응시자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의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운동능력 향상효과가 없어야 한다.
- ▶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한다.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소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붙임5

I 금지약물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약물은 다음과 같다.

1. 동화작용제 : 총 7종 및 그 대사물질¹⁾

가.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AAS)

① 외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Exogenous AAS)

- ▶ 드로스타논론(drostanolone)
- ▶ 메티놀론(methenolone)
- ▶ 메타스테론(methasterone)
methasterone(17β-hydroxy-2α,17α-dimethyl-5α-androstan-3-one)
- ▶ 스타노졸롤(stanozolol)
- ▶ 1-테스토스테론(1-testosterone)
1-testosterone(17β-hydroxy-5α-androst-1-en-3-one)

② 외인성으로 투여된 내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Endogenous AAS)

- ▶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

나. 기타 동화작용제 : 클렌부테롤(Clenbuterol)

2. 이뇨제 : 총 3종

- ▶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hydrochlorothiazide)
- ▶ 클로로티아지드(chlorothiazide)
- ▶ 푸로세마이드(furosemide)

3. 흥분제 : 총 3종

- ▶ 메틸헥산아민(methylhexaneamine, dimethylpentylamine))
- ▶ 메틸 에페드린(methylephedrine)
- ▶ 에페드린(ephedrine)

※ methylephedrine과 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을 경우 금지된다.

1) 대사물질 : 생물학적 변환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모든 물질

4. 마약류 : 총 11종

- ▶ 부프레노르핀 (Buprenorphine)
- ▶ 덱스트로모라미드 (dextromoramide)
- ▶ 헤로인 (diamorphine, heroin)
- ▶ 펜타닐 (fentanyl) 및 유도체
- ▶ 히드로모르폰 (hydromorphone)
- ▶ 메타돈 (methadone)
- ▶ 모르핀 (morphine)
- ▶ 옥시코돈 (oxycodone)
- ▶ 옥시몰폰 (oxymorphone)
- ▶ 펜타조신 (pentazocine)
- ▶ 페티딘 (pethidine)

II 금지방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도핑검사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소변 바꿔치기 및/또는 섞기, 이와 유사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

붙임6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신체조건표

부 분 별	합 격 기 준
체 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 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신(色神)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 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제7항 : 상기 신체조건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다.

붙임7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구 분	내 용
1. 일반 결합	가.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의 사상충병(휘다리야병·트리빠노쪼마병·일본주혈흡충병) 라.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사람
2. 비·구강· 인후기관 계통	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회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구강·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3. 치아 계통	가. 진구성인 아래턱관절장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저작근)의 질환 및 손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 나. 아래턱 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다. 진구성 복잡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라. 발음기능 및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잃은 사람
4. 흉부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확장증, 중증 폐기종,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
5. 심장· 혈관 및 순환기 계통	가. 심부전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방실전도장애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사. 폐성심
6. 복부장기 및 내장 계통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증대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다. 거대결장·계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으로서 난치인 경우

구 분	내 용
7. 생식 비뇨기 계통	가. 중증 요실금 나.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신질환(腎疾患) 다.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8. 내분비 계통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반질환이 합병되어 있는 에디슨씨병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 등의 합병증 마.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9. 혈액 또는 조혈 계통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재생불량 빈혈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을 포함) 마. 진성적혈구 과다증 바. 백혈병
10. 신경 계통	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 포함) 라. 뇌 종양 및 척수 종양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외상성 신경질환 바.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말초신경질환 사.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아.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11. 사지	가. 소방장비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골절·관절 질환자

구 분	내 용
12. 귀	가. 두 귀의 교정청력이 각각 40dB 이상인 사람
13. 눈	가. 두 눈의 맨눈시력이 각각 0.3 미만인 경우 나.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1/3 이상인 경우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활동성·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라. 중심 시야 20 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眼球振盪)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14. 정신 계통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병 라. 마약중독 및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간질
15. 혈압	가. 고혈압 : 수축기 145mmHg을 초과 또는 확장기 90mmHg 초과 나. 저혈압 : 수축기 90mmHg 미만 또는 확장기 60mmHg 미만
16. 운동 신경	가.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있는 경우

붙임8

구급분야 종사경력 인정범위

(간호사)

-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1급 응급구조사)

-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구조 및 이송업무를 행한 구급경력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안에서 현장, 이송 중 또는 의료기관안에서 응급처치 업무에 종사한 경력

가. 의료법 제3조 각 항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

※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119구급대**에서 근무한 경력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동법 제44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득한 **이송업체**에서 근무한 경력

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바. 지역보건법 제10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

사. 학교보건법 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

아. 소방관련 교육기관(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교수**로 근무한 경력

자.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 또는 **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으로 **구급대원 보조업무**로 근무한 경력(구체적 복무확인서 필요)

차. 군(軍), 해양경찰 등에서 의무병과 및 응급 분야에 근무한 경력

카. 119구급상황관리사로 근무한 경력

타.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